

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

제1조(주임교수 임명)

- ① 본 대학원은 각 학과마다 주임교수를 두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주임교수는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주임교수는 학부 학과장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전공분야의 상이, 직급, 연계 학과의 학부내 부재 등의 문제로 대학원 학사업무 관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학원학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주임교수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.

제2조(주임교수의 직무)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당해 학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과목 설정 및 개설을 위한 학사절차의 관장
- ② 당해 학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관장
- ③ 석·박사 학위논문 연구계획 발표회 및 학위논문 공개발표회 관장
- ④ 개별 학생의 지도교수에게 학사지도위원회 구성 위촉
- ⑤ 입시 면접(구술시험) 관장
- ⑥ 기타 당해 학과의 중요학사 업무의 처리

제3조(주임교수의 임기)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지도교수 위촉)

- ① 본 대학원은 개별 학생의 학업과 연구활동을 위해 학생 개인별 지도교수를 둔다.
- ②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의 첫 학기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지도교수의 자격)

- ① 석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 비전임교원 및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.
- ② 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 다만, 논문지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인의 교수가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. 공동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과 타 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2인의 지도교수 중 제 1지도교수는 학과주임교수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한다.

논문 관련 행정 업무는 제 1지도교수가 담당하되, 모든 심사에는 제1· 제2지도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하며, 최종 학위논문 제출 시 2인의 공동지도교수를 명시하여야 한다.

- ③ 특성화트랙전임교원의 지도교수 배정은 석사학위과정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지도교수의 직무) 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당해 학생의 수강과목선택 및 학위청구논문작성의 지도
- ② 석·박사 학위논문 연구계획 발표회 및 학위논문 공개발표회 참석 및 지도
- ③ 지도교수로 위촉된 후 당해 학생 학사지도위원회의 구성
- ④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감독 및 부정행위 방지 지도
- ⑤ 기타 당해 학생의 학사에 관한 지도

제7조 (지도교수 변경)

- ①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'지도교수 변경 신청원'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학생지도가 불가할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 (지도교수 연장)

- ①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되면 명예교수 재직기간 동안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9조(학사지도위원회)

- ① 학사지도위원회는 당해 학생의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학사지도위원회는 당해 학생의 교과목 수강, 논문주제 설정을 지도한다.

제10조(대학원학과위원회)

- ① 주임교수는 전공의 다양성과 특성에 따라 학과 내에 2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하는 대학원학과위원회(이하 "학과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학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겸임한다. 다만, 학과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.
- ② 학과위원회는 교과목 신설 및 개정, HUFSSAN장학생 추천, 대학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, 종합시험 운영 및 입시 면접시험 참여 등 주요 학사업무와 관련하여 주임교수에게 자문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내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(시행일) 본 내규는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5. (시행일) 본 내규는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6. (시행일) 본 내규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